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본회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위증죄 공소제기 가능〉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98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기형 · 복기왕 · 박수현 · 정진욱 · 부승찬 · 김남근
조계원 · 윤건영 · 이광희 · 정성호 · 박희승 · 양부남
이병진 · 송재봉 · 위성락 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 의안번호 : 319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인 등의 위증죄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고발)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5조(고발)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¹⁾는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법」이라고 함)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제14조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위증의 죄 등을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현행법은 위증죄와 관련하여,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거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법원은 고발을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보고 있고, 나아가 그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관련하여,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 위증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곤란하여 위증이 명백한 경우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위원회 등의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증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 증언·감정의 진실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특정 주체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고 있고²⁾, 이러한 입법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분야, 형법 남용으로 민간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분야,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에 도입되어 있음³⁾⁴⁾.

2) 이재상, 조균석, 이창은, 『형사소송법』 제15판, 박영사, 2023, p.132

3) 박영동,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경쟁법연구, 한국경쟁법학회, 2010., p.164

[표-2] 특정주체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으로 규정하는 입법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고발) ①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② 제9조와 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위증죄에 대하여 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직접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위원회의 존속여부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위증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회 내에서 위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기대효과와 함께 판례가 “「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본회의나 위원회의 고발을 공소

4) 학설과 판례는 「증언감정법」 제15조의 고발도 전속고발제도의 하나로 보고 있음. (이재상, 조균석, 이창운, 『형사소송법』 제15판, 박영사, 2023, p.132)

제기 요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남발 또는 불필요한 정쟁의 제기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